

제410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9월13일(수)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32)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3)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4)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2)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0)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7)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2)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1)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3)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8)
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5)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4)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2)
1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6)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3)
21.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8)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8)
2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1)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4)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44)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4)
2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1)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2)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7)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2)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
3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7)
3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9)
3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1)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8)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2)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6)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3)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2)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8)
4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4)
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2)
4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0)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7)
4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23)
4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
4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0)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3)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7)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7)
5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7)
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7)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0)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8)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2)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3)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9)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6)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5)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3)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2)
6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8)
6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9)

6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4)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8)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1)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8)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1)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5)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7)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2)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8)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8)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6)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9)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2)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5)
8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2)
8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7)
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9)
8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2)
8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1)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1)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3)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7)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6)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7)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7)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9)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1)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1)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4)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7)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6)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6)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6)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72)
1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5)
1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6)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8)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7)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8)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7)
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6)
1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3)
1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9)
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3)
1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5)
112.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0)
1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2)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4)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5)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5)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2)
1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3)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7)
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7)
12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8)
1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2)
1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4)
124. 산업재해 예방과 구직자 알권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용혜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 번호 2100147)

상정된 안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32) 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3) ... 8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4) ... 8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2) ... 8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7) 8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0) 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8) 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47) 8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2)	8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1)	8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3)	9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8)	9
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5)	9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4)	9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2) ...	9
1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9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6) ...	9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	9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9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3)	9
21.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8)	9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8)	9
2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1)	9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4)	9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44)	9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4)	9
2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1)	9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2)	9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7)	9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2)	9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	9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	9
3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7)	9
3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9)	9
3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1)	9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8)	9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2)	9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6)	9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3)	9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2)	9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8)	9
4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4)	9
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2)	9
4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0)	9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7)	9
4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23)	9

4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	9
4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	9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0)	9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3)	10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7)	10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	10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7)	10
5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7) ...	10
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7) ...	10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0)	10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8)	10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2)	10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3)	10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9)	10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6)	10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5)	10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3)	10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2)	10
6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8)	10
6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9)	10
6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4)	10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8)	10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1)	10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8)	10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1)	10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5)	10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7)	10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2)	10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8)	10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8)	10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6)	10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9)	10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2)	10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5)	10
8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2)	10
8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7)	10
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9)	10
8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2)	10
8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1)	10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1)	10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3)	10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7)	10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6)	10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7)	10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7)	11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9)	11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1)	11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1)	11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4)	11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7)	11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6)	11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6)	11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6)	11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72)	11
1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5)	11
1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6)	11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8)	11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7)	11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8)	11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7)	11
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6) ..	11
1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3) ..	11
1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9) ..	11
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3) ..	11
1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5) ..	11
112.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0)	11
1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2)	11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4)	11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5)	11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5) ..	11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2) ..	11
1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3) ..	11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7)	11
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7)	11
12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8)	11
1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2)	11
1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4)	11
124. 산업재해 예방과 구직자 알권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용혜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 번호 2100147)	11

(13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
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 청문회 개
최를 제안했고 어제 위원장을 포함한 양당 간사,
환경부차관 등과 사전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습니
다. 논의 결과 피해조정안을 포함한 이 문제 전
반적인 내용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환노위 차
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본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주신 이수진·임이자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가슴기살
균제 피해가 확인된 이후 국회와 정부, 법원 등
을 향한 피해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
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
으로 여러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유족들의 삶은
점점 폐쇄해졌고 그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가
슴기살균제피해구제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22년
조정안 초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각종 문제로 인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
금은 모든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시
계를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해 가해 기업과
정부, 조정위원회 등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이
번에 공청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31일

기준 사망자는 1825명이고 생존 피해자 6034명 중
현재까지 504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
민국 최악의 화학참사라 불리는 가슴기살균제 참
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더 이상 침묵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제 역
할을 해야 합니다. 공청회가 최선의 대안을 도출
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
극적인 호응 부탁드립니다.

1. 가슴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32)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3)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2054)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2062)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23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050)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6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747)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962)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21)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3)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8)
1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5)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4)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2)
1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6)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6)
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
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
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3)
21.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8)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8)
2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1)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4)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44)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4)
2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91)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2)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7)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2)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5)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7)
3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57)
3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9)
3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1)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8)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2)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86)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3)
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2)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8)
4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94)
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청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2)
4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0)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7)
4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23)
4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8)
4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6)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0)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3)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7)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6)
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7)
5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7)
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7)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0)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8)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2)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3)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9)
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6)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5)
6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3)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2)
6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48)
6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9)
6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4)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8)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61)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8)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1)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5)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7)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2)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8)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8)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6)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9)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2)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5)
8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2)
8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27)
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9)
8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2)
8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1)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71)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33)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7)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56)
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7)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77)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639)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811)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861)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54)
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117)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196)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286)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66)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72)
1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5)
1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96)
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18)
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7)
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8)
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7)
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6)
1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3)
1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9)
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3)
1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5)
112.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40)
1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2)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4)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5)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05)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2)
1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3)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7)
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7)
12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8)
1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502)
1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344)
124. 산업재해 예방과 구직자 알권리를 위한 직업 안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용혜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47)

(13시09분)

○위원장 박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4항까지 이상 12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김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은 친환경에너지이자 대체수자원인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저를 포함해 12인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등 재이용시설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사용료를 경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외되어 있어 대체수자원과 친환경에너지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가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대체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혜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돼 폐열 활용, 가물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친환경적인 수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김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노위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거름망이 없습니다. 옷을 세탁하면서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은 관련 법안 그리고 전자부품과 관련해서 미세플라스틱을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서 원인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 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위원장으로 일했던 곳에서 이렇게 직접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박정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할 때 발언대를 2개를 설치해서 위원님들 목 안 아프게 했는데 안 없애고 이렇게 2개를 유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손을 못 대 왔던 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주변 지자체가, 반경 10km가 공장 설립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안성 같은 경우에는 유천취수장, 평택취수장의 위치는 평택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는 우리 안성 지역입니다.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 약 2000만 평이 지금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해제 권한이 취수장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네가 피해 안 보고 옆의 동네가 피해 보는데 이것을 스스로 해제할 그런 자치단체장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지역에 1979년 지정된 이후에 44년 동안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그 피해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천취수장이 평택 시민들이 먹기 위해서 마련한 데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도 안 하고요, 이미 3급수로 전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탄취수장은 이번에 용인에 삼성이 들어서면서 일부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는 우리 안성 지역은 피해를 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이 뭐냐 하면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전혀 해결 안 되게끔 지방자치단체에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권 개정안을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접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끔 하고 환경부장관은 공청회를 통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만의 사례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원주와 횡성도 이런 일이 있고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 안 되는 일을 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광역행정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양 지역이 다 같이 합리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선배 상임위원장이신 김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회는 전관예우는 없지만 들어 보니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법안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2항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디지털 전환과 COVID-19 팬데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규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까지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개별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개념을 파편화하고 기존 법 제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변화된 노동시장의 환경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 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6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52개 법률안 중 3개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유사 환경법률과 비교하여 과도한 처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법률 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수도시설 관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직업 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들은 그간 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살펴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환경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66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미성년자는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자격 응시제도와 같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넓히되 실제 자격행사는 성인이 된 날부터 유효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총 53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 제66항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정 마이크 좀 가깝게 쓰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기업의 ESG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대응기금의 경우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즉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운용,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녹색혁신기업 지원 등을 실시함에 있어 지원대상기업의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의사일정 제15항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만을 운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행지역의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으로 한정하고 운행 가능 자동차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이주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 기관에 소속된 기술인력이 거짓의 검사기록을 작성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의사일정 제18항 지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0일 이후에 사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 신고로 변경하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의사일정 제21항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 규제, 저감·제거기술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국제적으로 현재까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 방지 및 조치명령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불명확한 위해성을 근거로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의 의견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 또는 방출되고 있어 제조·수입 금지 규정 신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의사일정 제24항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도법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수도사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에 대하여 10년마다 지자체별 수도사업 통합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 수도경영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통합 취지에 맞게 수도사업 통합의 정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에 따라 상수도조합 인가권자를 구분하는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22개 지방상수도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9895억 원이 투입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토대로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의 수돗물 공급 사업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운영 결과 상수도 보급률의 증가, 생산원가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무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수공에 대한 수도사업 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의사일정 제30항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장·공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현행 포획·채취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의사일정 제32항 이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곰 사육 종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의사일정 제38항 박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의사일정 제48항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조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70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사일정 제54항 이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지정취소 및 국가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부 예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센터 지정은 매년 적합한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유연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홍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직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 김형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령층 인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사일정 제65항 노웅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일반응시자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부칙(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유사 내용을 규정한 세무사법 부칙규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합격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페이지, 의사일정 제72항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지

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는 반면에 재직근로자의 경우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 형평의 문제가 있는바 재직근로자인 임금 체불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홍영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열·한랭·다습한 작업 환경으로 근로자 등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폭염·한파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조치의무 발생 요건이 ‘고열·한랭·다습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폭염 및 한파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이은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최근 다변화된 고용환경을 반영한 일하는 사람 보호 체계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상황에 부합하는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의사일정 제114항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대신에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을 줄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고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123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4항의 청원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저 토론 전에 의사 진행발언……

○위원장 박정 이것 먼저 하고서 기회 드릴게요.

○이수진(비) 위원 예.

○위원장 박정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m³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 Bq에 이릅니다. 이것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44만t의 오염수 중에서 0.5%에 해당합니다.

방류 중단 기준인 ℓ 당 700Bq 이하라고는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ℓ 당 10Bq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30년간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해수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환경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대책으로 또 환경부는 너무나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 입씨름만 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께 죄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련한 논의들을 이어 가면서 여당 위원님들과 분명히 전문가를 포함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노위 차원의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하셨고 저희도 공청회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두 차례 이상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점점 커져 가는 국민적 불안과 그리고 배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과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분명히 할 얘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공청회를 열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토론회를 한다, 하자, 같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 알았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께서 이상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렇다면, 당 차원의 토론을 할 수 없다면 우리 환노위 차원의 공청회가 한시라도 빠르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 지난번에 두 양당 간사님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의가 없었나요?

○임이자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술하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가 IAEA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와 관련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는 의견은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노위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환노위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양 원내대표들, 지도부에 말씀드려서 각 당 차원에서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공청회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안 하시잖아요.

○임이자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수진(비) 위원 그것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도 우리 당에 이야기할 테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짜 전문가들 모시고 그렇게 해서 공청회 하는 것을 저 동의합니다.

○우원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 우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우원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성일종 의원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7개월 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시료 채취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 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간에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닌데, 정당 간에 논의를 했는데 국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상해요.

○임이자 위원 아니, 아니지요.

○위원장 박정 다 끝나신 다음에 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제가 얘기……

과학,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는데 괴담이, 제안을 했는데 과학이 토론을 안 받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토론도 못 할 정도의 과학은 그것은 과학도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토론 제안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 간 토론은 어렵게 됐고 그러면 환노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존경하는 성일중 의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우원식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은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봤을 때는 일단 토론회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개월 후에 제주 앞바다에서 시료 채취하자라는 것을 못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민주당에서. 그거 왜 못 들어줍니까? 7개월 뒤에 시료 채취하는 건 하는 거고 그전에 토론회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 봐도 시료 채취하자 하면 성사되는 것 아니겠어요? 못 들어줄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차원보다도 각 정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국민들은 진짜 피곤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하자면 양당 차원에서 크게 공청회 한번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진성준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 임이자 간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임 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공청회·토론회 다 좋다, 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다시 이건 양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해서 정당 간에 협의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하고 관련한 공청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임이자 위원 반대하지 않는단 얘기지요.

○진성준 위원 반대하지 않으면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임이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박정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간사 간의 합의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양당 원내지도부에 얘기해서 협상을 하게 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진작부터 드려 왔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께서도 받아 주셔서 간사 간에 합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임이자 간사님도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양당 원내대표니 양당 원내지도부한테 논의하라고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두 분 간사가 즉시 일정을 합의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두 간사님들 간에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것 뭘 정리를 합니까, 양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위원장 박정 노웅래 위원님, 같은 취지이신 거지요?

○노웅래 위원 예,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원내지도부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유관 상임위가 다 합쳐서 공청회나 토론회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양 간사가 협의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거고 야당에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피담이 안 되고 가짜뉴스가 안 되려면 이것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라도 이것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회건 공청회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서로 하자 말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 지금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비단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환경부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해서 책임의 분량을 따지자면 해수부라든지 다른 상임위나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서 많지 않은 부분도 첫 번째 있고요.

7개월 뒤에 제주도 앞바다의 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7개월 뒤에 물이 제주도 앞바다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셨으니 그 문제가 지금 국민 피해에 가장 당면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하자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 같이 하는데, 뜨지 말자 그러면 공청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설령 지금 당 대 당으로서 이것을 이슈화시키다 보면 이슈화된 자체로 인해서 또 수산업계 어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혀서 환노위에서 공청회를 열면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각 당에서도 관련 TF들도 있고 TF 활동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7개월 뒤에 제주도 앞바다 물 시료 뜨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오픈시킨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양당 간사 간에 논의할게요.

○이수진(비) 위원 날 잡을게요, 같이. 논의해서 잡읍시다.

○위원장 박정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지난번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청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날짜를 잡아 달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의 협의로 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노동부장관님,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다가 사실 저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보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대정부질문이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하셨고 또 경사노위에서 계속 회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철벽 치는, 비토 수준의 제 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이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어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영권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견상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의 이유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거야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종속성을 갖는 비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 이게 이 법안의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랜서·플랫폼·특고 이분들이 당장 그 대상이고, 물론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속 개선책이 마련돼 왔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로 포괄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의 적절한 보수·소득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적정 보수·소득이 최저임금, 생활소득, 기본소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분쟁 및 혼란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마치 비임금 노동자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급여를 요구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듯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매우 비현실적인 지적이라는 것을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현실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방송작가들, 경력 20년 넘었는데 한 달 원고료 230~24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경력과 직무에 맞는 임금을 요구해야 하는 것,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일의 가치나 성과에 맞는 임금체계를 갖추자는 건데 이게 바로 각각의 직무에 대한 적정 임금을 설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수천·수만 가지 직무에 대해서 적정 임금을 수립하자라고 하면서 적정 보수를 프리랜서나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요구하면 분쟁과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하는 사람의 휴식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의 시간·장소가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경우 사업자의 의무 이행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시간과 장소가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도 그것이 자유가 아닌 그런 프리랜서들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혹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고개를 저음)

○이은주 위원 이게 142억 뷰가 넘어가는 초인기 웹툰인데요. 그림을 맡았던 유명 작가, 한 회에 1000컷 이상의 작화를 해야 되나 봐요. 이 작가가 서른일곱 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인이 뇌출혈이었습니다. 과로사에 해당하는 거지요.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작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작업시간이 하루 10.5시간, 주 5.9일.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는 작가도 17%나 됐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마감이 있고 휴식일은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맞게 계약조건에 휴식을 넣어서 살인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게 사업주의 의무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게 바로 이 법안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업무보고·입법계획 말씀해 주셨지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법안에 준비 중인 것도 알고 있고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과연 무엇을 보호하려는 건지 사실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대체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남을 거며 애초에 이야기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건지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 상정 전에 검토보고를 하는 것은 이 법을 편견 없이 제대로 논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김 빼는 방식의 의견을 달아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드신 건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 논의 때 편견 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편견 없이 건설적으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만든 안을 꼼꼼히 봤습니다. 그것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신 내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보·진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 핵심 중의 하나고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경사노위 내 이중구조개선연구회에 분과가 있습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계약 방식도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다 다를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가는 방향에 공감을 하는 전제에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면 일정한 성과가 있을 거다, 물론 사회적 대화도 포함하고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을의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우원식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즉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썽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우원식 위원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 이것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어요.

또 ‘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썽요.

○우원식 위원 그것은 성일종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괴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비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글썽요. 위원님, 계속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괴담’, ‘괴담’ 얘기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제가 내일모레 런던·제네바를 가는데 런던 가는 것은 IMO 런던 협약·의정서 때문에 가거든요, 거기 사무총장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10월 달 총회의 의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러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런던협약을 질의하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모니터링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보냈더니 환경부는 ‘해수부가 소관 부서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런던의정서·런던협약, 지금 10월 달에 안건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그 부분은 사실 해양수산부 담당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할 일은 없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 TF에서 해수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생물다양성협약은 누가 책임집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부가 책임을 집니다.

○우원식 위원 환경부가 하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육상생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원식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우원식 위원 그게 생물다양성협약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그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일본이 실시했나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그 부분은 IAEA에서 그때 종합보고서에 보면……

○우원식 위원 아니, IAEA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나 이거예요.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의뢰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생태계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냐고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이 그런 것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해수부 중심으로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 말고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IAEA 종합보고서에서도 보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더니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경영향.....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그런데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IAEA에서 한 것 말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일본이 환경영향평가 하고 우리가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했냐 이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여기서는 해양 방출하고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권고한 먹이사슬을 고려한 농축계수라든지 그걸 적용한 부분 또 장기간 영향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방사선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원식 위원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지요? IAEA는 국제기구, 그것은 일본이 아니고 IAEA고요. 일본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해서 우리나라한테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일본이 한 부분.....

○우원식 위원 장관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누가 뒤에서 자꾸 코치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원식 위원 코치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본의 환경.....

○임이자 위원 오늘은 현안질의가 아니라서, 지금 법안만 하는 거라서.....

○우원식 위원 아니, 그것은 IAEA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그것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장관이 당연히 일본에 하라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일본이 안 하면 그걸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물다양성협약하고 관련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된 조문에 대한 부분, 일본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안 했어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원식 위원 확인하시고, 일본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있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위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년에 열리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터키에서 열리는데 거기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하도록 해야지요. 왜 그런 것을 환경부장관이, 당연히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왜 그걸 검토를 안 하나 이거예요. 런던협약은 해수부가 하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경부가 관계하고 있는 이 협약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정리해 주시지요.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법안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우선 대체토론해 주시고 양당 간 간사의 합의는 없었지만 꼭 필요하신 현안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제가 한 번 정도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법안 대체토론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학영 위원님, 대체토론 관계된 거지요?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경기 군포 이학영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환경부 관련 법안을 2개 올렸는데요.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는 야생동물 보호법인데 환경영향평가법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당진 소들섬에 지금 한전이 송전선을 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 아니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랬는데 한전은 우리는 10년 전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하고 밀어붙이고 있고 해서 거기 지자체 당진시와 여러 주민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집행정지도 하고 하지만 이게 분란 속에 계속되고 있어서 법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 내용은 첫 번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하나 넣자는 거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사유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애초에 한 번 받은 것으로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법을 냈으니깐 그걸 심의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또 하나 야생생물 보호법은 곰사육이 지금 현재도 민간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민간과 협이가 돼서 일정하게 보호구역을 만들고 정부가 관리하면 민간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겠다 하는 협약을 한 거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현재도 이것이 제대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민간은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고 또 가끔 민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생활지역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키고 위협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정부가 빨리 관리보호구역을 만들고 관리보호소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법을 냈는데 그런 법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이번 21대 넘어가면 또 다시 민간과 합의했던, 협의했던 조정안이 실패로 돌아가면 차질이 빚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21대에 통과시키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신 거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야생생물법에 관련해서 곰사육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태평양이 아무리 넓다지만 또 아무리 깨끗이 걸러낸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당장 당대에는 내가 죽거나 위협받는 일은 없다고 할

지라도 내 후세 세대들은 괜찮을 건가 하기 때문에 저는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왕 방류를 한 이상 제대로 검증을 해서 제대로 안심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일본 정부에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피해를 가장 빨리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7개월 후에 해류에서 떠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토하자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1000여 개의 ALPS를 통과한 검출수들, 그것을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이 가서 일본과 함께 하든 따로 하든 시료 채취를 매 탱크마다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게 그것 아니에요? ALPS가 걸러 냈지만 제대로 걸러 냈겠냐, 삼중수소만 있겠냐, 다른 핵 오염물질도 남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아예 방류하기 전에 안전하다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받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의구심은 계속 쌓여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 지나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환경부장관께서는 그런 국민의 우려, 그다음에 검증의 원초적인 핵 오염수 처리수들, 탱크에 있는 것을 시료 채취를 함께 하자, 함께 검토하자 그리고 방류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심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말씀을 하나 조금 약간……

○**이학영 위원** 하여튼 제가 고용부장관님께 한마디만 드리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고용부장관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지금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이학영 위원** 5년마다 지금 발표해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이학영 위원** 지금 향간의 소문이 사회적기업 예산도 줄이고 사회적기업을 전부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태조사한 것을 빨리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과 정책에

서 후퇴하지 않도록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에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정말로 그냥 직접 지원해 주고 마구 해 주는 방식에서 자생할 수 있고 정말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부분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시되 원초적으로는 적극 지원한다 하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없애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학영 위원** 환경부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결국은 일본이 계획대로 당초에 계획한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국제사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IAEA 하고 같이 검증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정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점검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피해를 가장 빨리 입는 게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것은 캐나다 그쪽이고요.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해양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빠르면 한 4~5년, 늦으면 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학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돌아서 온 바닷물, 희석된 물을 시료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보다 원수, ALPS에서 나온 원수를 가지고 시료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이 훨씬 안전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꾸준히 강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하면 지금 IAEA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 파견을 일차적으로 했지요.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3명 파견을 해서 방류 전 과정을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기술회의 또 현장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학영 위원** 그 주장을 계속하시면 계속 불안은 쌓여 가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이학영 위원** 지금 일본의 방식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투명한 정보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께 공개하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가 계속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또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지금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좀, 정부에 대해 그런 부분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믿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들은 다음에 공청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다만……

○**임이자 위원**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라고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박정** 날짜 조정을 하시는 거고 하기로 한 거니까……

○**임이자 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이학영 위원** 아까 하기로 했어요.

○**임이자 위원** 아니, 잠깐만. 그건 위원장님께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반대 안 하신다면서요?

○**이수진(비) 위원** 저랑 논의하시자면서 왜……
일정만 논의하면 되잖아요.

○**진성준 위원**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해.

○**임이자 위원** 내가 언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잠깐 쉼 봐요. 그걸 내가 피하는 건 아니고 잠깐만……

○**위원장 박정**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후쿠시마 핵 오염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공청회를 피한다거나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원내 지도부들끼리 얘기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제 청이었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냥 날짜 정해 가지고 하시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 왜 나오십니까? 성일종 의원님이 우리 환경노동위원이시기를 합니까, 뭘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정** 아니, 의견을 말씀하시려면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진성준 위원** 정당 간의 토론 문제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환노위 차원의 공청회를 하자는 건데……

○**임이자 위원**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 손 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저희 환노위가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걸 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우원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생물 다양성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도 해 본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또 저도 한 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다른 타 특위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서로 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왕이면 당 대당 차원에서 지도부들끼리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노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차원인데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날 잡아 가지고, 날짜만 잡으세요’ 이걸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예, 임이자 간사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다만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현안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임이자 위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위원장 박정** 예, 또 지도부가 다 상임위를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인데 여기에서 논의가 돼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여기에서 논의가 다 안 되니 두 분의 간사님께서 합의하셔서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아 주십시오’ 했고 그 일정 논의가 안 됐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수진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여러 의견을 들어 봐서, 아까 임이자 간사님의 의도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러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 그러니 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당 대당 차원에서 이런 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면 진행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진성준 위원** 예.

○**위원장 박정** 진성준 위원님, 예.

○**진성준 위원** 우선 공청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인데 왜 자꾸 무슨 정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성일종 의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일종 의원이 우리 환경노동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도 당내 사정을 알아보십시오마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청회를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이런저런 것을 막 살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

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간사 간에 즉시 협의 하셔서 낱자를 조만간에 정해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나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환경부장관 말씀 답변을 들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핵폐수에 섞여 있는 방사성물질을 제아무리 바닷물로 희석해서 바다에 내보낸다고 해도 바다에 들어가는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방사성폐기물을 막 희석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내보냈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폐기물도 희석해서 버리면 다 됩니다. 희석해서 다 버리면 돼요. 그런 것을 막자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인류 모두의 자산인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건강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을 완전히 걸러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 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야당과 국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다 희석해서 내보내니까 안전하다, 그게 과학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이게 환경부장관이 하실 말씀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진성준 위원** 환경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될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느냐고요.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이쪽에 하세요, 이쪽으로!

○**진성준 위원** 저는 도무지 이런 답변을 이해할 수 없고요.

○**임이자 위원** 왜 장관에 대고 얘기하세요?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과학적인 답변이 계속돼도,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아무리 물을 섞어서 희석시킨다 한들 바다에 들어가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이 줄어드느냐고요. 또 그렇게 희석시키기로 들면 세상의 그 어떤 폐기물도 다 희석시켜서 내보내고 말지요.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과 생태를 지켜야 될 환경부장관이

이런 답변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숨을 어떻게 쉬고 살아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있는데 숨을 어떻게 쉬고 사느냐고!

○**이수진(비)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손 들고 하셔.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진성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환경부장관께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들을 답변하실 것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지성호 위원**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큰 사안인 것은 사실이고 또 아시다시피 여당 또 야당의 서로 대립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단지 이 순간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에도 특위가 가동 중에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위원님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특위가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간사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또 저희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이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박대수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 들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 이런 것은 피하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는 수없이 언쟁하고 지금 대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원내 당 대 당 해서 공청회를 가져 보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상임위에서, 환노위에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셔서 다 수궁했습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말을 달고 또 달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지요, 지금. 시간만 가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논쟁만 되고 서로 상처받는 얘기 하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할 일이나 이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대체토론과 관련해서는 진행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에서 안 하는 것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예,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피 정확히 정리를 해 드리면 지난번 상임위 때 공청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고 양당 간사님께서 일정 및 이런 것들을 합의해 주시겠다 했는데 진행이 안 됐고 이수진 간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의견들을 좀 들어 봤습니다.

양당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청회 하는 이유는 전문가를 모시고 양쪽에서의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은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00% 다 한편으로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전환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그런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 한쪽에서만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었지 같이 모아 놓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청회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당 지도부에도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서 있다고 그러면 더 크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아까 이미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대해서 이수진 간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공청회의 필요성은 양당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임이자 간사님과 성실하게 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9월 8일 날 국정과제 추진 점검회의 하셨더라고요. 이것 잘 추진 중에 있는 것

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도 해당 점검회의 때 보고받고 논의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가능한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등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한 것들을 보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포괄임금제 근절에 대한 법 개정 이야기를 하셔서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은 법안이 발의돼서 오늘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구체적인 대책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절 관련해서는 입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입법 사안의 경우에는 야당과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수준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입니다.

위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개 사안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또 많은 의원님들이 근기법은 이번에 발의들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진짜 해법 중 하나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노동계도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서 올해 안에 법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말 대책이나 법안 발표를 하겠다고 언론 통해서 계속 알려져 왔는데 이게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입장은 무엇이고 또 언제쯤 구체적인 대책이나 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답을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께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를 해서 오늘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작년 2022년 11월 16일 제가 같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한 5일 뒤인가요, 장철민 의원도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또 입법부의 역할을 논의해 봐야 되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답을 좀 주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여야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5인 미만, 동노동임, 이중구조 개선, 취약계층,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전혀 준비도 안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부분 준비된 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되는 대로 언제든지, 전제한 것이 여야와 입법부·행정부가 서로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 법이 통과되는 거니까……

○**이수진(비) 위원**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좀 책임 있게,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론을 보고 8월 말에 곧 발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로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중대시민재해로 첫 입건된 지자체장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8월 7일 경남 합천호나들목 건설현장, 신호수 업무 하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9월 6일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 공장, 40대 노동자가 신차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9월 7일 경북 울진, 벌채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작업자 사망했고요. 9월 11일 충남 서천 발전소, 보일러 배관 파열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9월 12일 강원도 정선, 석회 붕괴 및 매몰로 1명 사망하셨고요. 중처법 시행 이후에 지금 2023년 6월 말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50인, 건설업종은 50억 미만 중대재해 적용 제외 또는 유예기간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대재해는 연이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 중처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50인, 건설업 50억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현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상반기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9.1% 감소를 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제조·건설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 가지고……

○**이수진(비) 위원** 제조업은 좀 줄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852건입니다. 이 중에 533건, 그러니까 62.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렇게 절반이 훨씬 넘는 사망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처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자 또는 적용 제외,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현재 입법 발의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 제정 당시에 3년을 유예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준비기간…… 그러나 중대재해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했을 거고.

현재 83만 사업장에 8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소된 20건만 보더라도 19건이 다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80만 사업장에 저희가 재정 지원이나 기술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 40만 개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이자 의원께서 입법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야가……

○**이수진(비) 위원** 장관, 저는 올해…… 그것 노동부에서 그런 말 할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준비하라고, 예산 배정하라고 지난 몇 년간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중처법 기본 취지가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지원하고 노력했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미 결론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망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책임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적용 제외 이런 것들만 꺼내 놓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것들만 언론플레이한다면 노동자들 생명과 안전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이걸 선언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니, 노동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 발의를 임이자 의원께서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실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것 같이 상의하시고 노동부에서도 방금 저한테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건 맞습니다. 현실이……

○**이수진(비) 위원** 그 취지에 맞는 법안을 여당 의원이 발의하신 거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그걸 감안해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노동부는 반대라는 말입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니, 적극적으로 여야가 논의할 때 저희들도 참여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의 진행이 미숙해서 여야 한번씩 하셔야 되는데 김형동 위원님 하실 차례에 이수진 간사님 하도록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형동 위원** 괜찮습니다. 국감에 예천까지 오신다는데……

○**위원장 박정** 안동·예천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저는 제안된 법률에 대한 대체토론 위주로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요새 저 깊은 산골에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 중의 하나가 공기청정기인 것 아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공기청정기요?

○**김형동 위원** 예, 저 뒤의 북한산 원효사에도 가면 스님들이 다 공기청정기 있어야 된다 그러

니다. 그만큼,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여기 미세먼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도 공기청정기 있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끗하고 깨끗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옛날에 우리 조그마할 때는 마당의 흙 퍼먹어 가면서 컸다, 형님들이……

○**지성호 위원** 저도요.

○**김형동 위원** 이 친구는 풀 먹고 컸고요.

모든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모든 의정활동을 환노위에서 후쿠시마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 한강 물에다가 소금 한 국자 떠 넣으면 저게 소금 물입니까,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묻는 질문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다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대기로 가고요. 그런데 그게 심하냐, 참을 만하냐, 과학적으로 그게 견딜 만하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기준 범위 내에 있다, 벗어났다는 것을 과학자로서 질의가 나올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형동 위원** 산속의 스님들도 공기청정기 쓴다니까요. 더 좋은 공기 좋지요. 그런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매연, 전기자동차 안 바꿔 주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애들 등하교 아직 안 바꿔 주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는데도 딱 데 쓰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취지인데 지금 지류·지천에는 가축분뇨가 아직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가지고 안동댐·임하댐에 녹조가 심각했어요.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 녹조의 기본 원인이 뭐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오염원 유입하고 또 수원……

○**김형동 위원** 그게 인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렇지요. 인이지요.

○**김형동 위원** 가축분뇨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면서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가축분뇨의 경우는 인이지요.

○**김형동 위원** 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원점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농림부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김형동 위원** 거기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원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 인분 처리하듯이, 더 이상 축산분뇨가 지류·지천으로 안 나오는 전제로 이 규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동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처벌만 낮추는, 이것 신호가 그냥 내버려 뒀도 된다, 그렇지요?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27항인데, 노농래 위원님 어디 가셨는가요?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습지가 됩니까? 여기 보면 습지보전법이 되어 있어요. 습지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물어봐 가지고. 그걸 같이 여쭙보려 하는 게 의사일정 제43항,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입니다. 지난번에 7월 말경에 우리가 하천법 개정안을 내면서, 배수영향구 간입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배수영향구간입니다.

○**김형동 위원** 이 부분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김성원 의원은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건데요. 우리가 지역에 가면 다 습지래요. 물이 이렇게 배수영향구간이나 천하고 만나는 데는 여기 모래톱이 좀 쌓이면 ‘저것 습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습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사실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선 원래 강이었고 원래 천이었던 곳은 반드시 준설을 통해서 물이 소통하는 게 우선이지 거기에 버드나무가 켜다 그래 가지고, 누가 습지라고 명명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건들지 못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예, 진짜 습지가 뭔지 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쭙봤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정기국회 국감 끝나는 마당에 엄청 많은 법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산 보고를 받으셨겠습니까마는요 지금 저출산, 일·가정 양립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 부분 재원을 지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에서는 전입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

다. 장관님께서 그걸 살펴보고 결산소위에서 임이자 간사께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분명히 이것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하나에만 주로 매달리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또 하나는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고 부대의견에도 계속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겼는데 이번에 1000억이 추가되어서 비율이 과거의 14%에서 16%로 올랐는데 단계적으로 더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동 위원** 고용보험기금 조성의 주체나 원래 목적 거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하고 최강욱 의원께서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이상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원래 취지대로 지원 보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외양만 그렇게 표시하고 사실상 사적인 이익을 취급해 왔던 것인지? 좀 전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계동 의원이라고 협동조합 운영하시다가 사실 조합원들을 구좌 2000만 원, 3000만 원에 사 가지고 자기가 대표하고 이런 방식이 행했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꼭 같은 대우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저는 같다고 보고.

지성호 위원께서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사고를 일으킨 그런 회사가 많은지 어떤지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것 중에 협동조합이 있고요,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옥석을 구분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되 역기능,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은 개선하자는 취지로 그래서 인건비 중심의 직접 지원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간접 지원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애초의 취지대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 김형동 위원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형동 위원 답하신다고요? 예.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까 소금물 말씀을 하셔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방사성 오염 처리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말씀을 하셨기는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비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방류 전에 우리가 69개 핵종 또 삼중수소가 있는데 이 삼중수소를 비롯한 69개 핵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의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단 확인하고 그다음에 방류를 하는 거고 ALPS로 걸러지지 않은 물의 성격이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그걸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가능한 처리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처리한다,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배출기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대정부질이나 여러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일반인의 선량한도가 1mSv입니다. 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갖고 각국에서 정한 개별 기준에 따라서 해양 방류·방출을 정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4만Bq/ℓ 고요. 미국은 3만 7000이고 일본은 6만Bq/ℓ 입니다. 이렇게 배출기준을 국민의 건강 이것을 고려해서 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기준, 환경기준 이렇게 구분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준수해서 방류된 거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지금 방사능의 어떤 해역에서의 모니터링 또 우리 주변 해역보다도 더 먼 바다, 먼 거리에서의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버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작년 예산을 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4206억 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223억 삭감, 고용유지지원금 1260억 삭감, 구직급여 2696억 삭감, 저임금근로자·예술인·특고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 삭감, 국민취업지원제도 2829억 삭감 해서 1조 56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내년 예산안이 긴축으로 해서 640조에서 660조로 조금 상향이 됐는데 특히 이 청년 관련한 취업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버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없었던 것은 또는 줄이거나 한 것은 한시적으로 한 것 또는 시범사업 한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노동개혁과 약자 보호의 핵심 취지는 청년 보호……

○김영진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김영진 위원 청년내일공제라든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코로나 시기에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로 예산이 설정됐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과 같이 더붙어서 청년의 취업을 지원해서 장기적인 고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지원이 돼서 수용성도 상당히 높았고 그다음에 지원하면서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마 추후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요……

○김영진 위원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작년에……

○김영진 위원 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김영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에 관해서 누구나 과학적인 검증과 과학적인 방식으로 잘 처리돼서 인체와 바다에 우려가 없게끔, 원하는 것은 저는 여든 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과학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못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됐다고 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2020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에 김기현 대표가 했던 발언이에요. 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과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하는 발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 읽어 드린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

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김기현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배출에 관해서 동일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ALPS를 통한 삼중수소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국제해양법에 의해 제소해야 한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결의안을 내는 데 찬성 입장을 했던 겁니다.

차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님. 민주당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20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원전 오염수 배출에 관한 입장에 대한 방향이 다른지, 같습니까? 똑같지요? 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의안을 내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오면서 바뀐 거예요.

장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거기서 제가 지금 딱 들어오는 것은 삼중수소 같은 경우 ALPS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다, 그 부분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종이 삼중수소고 나머지 핵종은 걸러진다는 거고요. 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희석해서 1500인가요? 그걸로 이제 지금 방류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일본의 그러한 방류 계획, 당초 국제사회에 하겠다고 한 그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것을 지금 국제협력·국제공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진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국제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어요.

장관님께 이렇게 똑같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회의록이에요. 2020년 외통위 10월 26일 김기현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언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다 괴담이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원래 원칙이 1200배로 희석해서 버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600배로 희석해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도쿄전력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바도 지키지 않고 우리 총리는 600배로 희석해서 버려도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최소한? 그게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발언이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환경부장관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맞습니다. 저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1200배, 700배, 600배 그것은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만 아마 처음에 1200배라고 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하는 운영 그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00, 그런데 지금은 한 700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처음 기준보다 벌써 절반이 떨어졌으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것은 이제……

○김영진 위원 1200배 한다고 하다가 그것조차 600배로 하면서 떨어뜨리는 도쿄전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우리 임이자 간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은주 위원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은주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체토론이 짧게 하나 더 있는데 간사님 먼저 하실까요.

○임이자 위원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정 아니, 제가 사회를 보는 거니까……

○임이자 위원 따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것은.

○위원장 박정 임이자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봐서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오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핵 오염 처리수 가지고 오늘 양당 간에……

이수진 위원님, 그 태도가 됩니까? 동료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웃으시면 어떡해요. 혼자 웃으셨지요?

○이수진(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요, 그러면? 답을 드려야 되니까.

○위원장 박정 아니, 잠깐……

○임이자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해 보세요.

○위원장 박정 아니, 진행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그 태도가 너무 불량하지않아.

○위원장 박정 의사진행발언드리는 것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고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시간을 줄여놔어……

○위원장 박정 시간 7분 다시……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이것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 아니,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수진(비) 위원 제가 그동안, 기록에 남는데 많이 참고 그동안 넘어간 게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뭘 참으셨어, 그렇게?

○위원장 박정 일단 질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하시는 거지 중간에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임이자 위원 오늘 후쿠시마 핵오염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양당 간에 뜨겁고 과거 정부

에서 여당과 야당이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여당과 야당이 하는 얘기가 서로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같이 모여서 사는 중에는 사실 국제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것은 정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파워가 힘 아닙니까, 파워가? 그렇지만 각자 나라들이 거기에서 너무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약이 있는 거고 국제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어떤 최상의 이익, 그 밑에 사활을 건 이익, 그 밑에 그것도 안 되면 전략적 이익 다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최상의 이익은 뭐냐면 우리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는 특히 북한의 핵을 이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가장 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국가 정책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활을 건 이익이라는 것은 존망에 가깝지는 않다 하더라도 뼈곳하게 되면 존망에 걸릴 수 있는 문제들, 항상 늘 살얼음판에 있는 외교들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이익이 될 수 있고 존망의 이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쪽 봤을 때는 각 나라마다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김기현 대표가 했던 발언 그다음에 또 김영진 위원님께서 또 한번 짚으셨는데 저는 그때는 야당 의원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얘기고 지금 현재 또 여기에 이수진 위원님이든 이학영 위원님이든 다른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또 야당으로서 야당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라라고 봐지고. 그때 당시에 강경화 외교부장관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라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이 말씀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은데……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단지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게 우리가 이제…… 우원식 위원님께서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즉 CBD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 핵 오염수 관련돼 갖고는 이게 ALPS 전해해서, ALPS를 거쳐서 69종 중에서 육십몇 종은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삼중수소 관련돼 가지고, 삼중수소와 탄소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걸러지지 않으니까 바다로 나갔을 경우에 이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 아니냐.

두 가지예요. ALPS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ALPS가 고장 났을 때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삼중수소가 우리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IAEA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방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가 협약을 해 놓은 것들이 한 서너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쪽 해 났는데 그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그 부분이 과학적 기준에 미달된다거나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방류 정지를 분명하게 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안 하지요.

○**임이자 위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달라진 것 없고 여당과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서 바뀐 거지, 여당 역할·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10월 2일에서 10월 6일 날 제45차 런던협약이 열리는 거잖아요. 거기 가시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에서도 가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이 아마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갈 길로는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에서, 당연히 하지요. 해양수산부에서 가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게 해양 폐기물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이 협약에서 이 핵 오염 처리수가 여기의 폐기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부터 거기서 논점이 찬반이 될 것 같고 안전이 상정됐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봐야 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CBD 관련돼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협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그다음에 일본 법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나가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만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럼요. 이건 투명한 정보, 투명한 자료 공개가 중요하니까요. 서로 간에 그런 자료는 공유하고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양수산부 소관은 맞아요. 분명히 부처가 정해져 있는데, 해양수산부 소관은 맞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부도 우리 부처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각 의원실에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런던협약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소관이 해양수산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제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야당에서 우원식 위원님이 어떤 자격으로 IMO에 가시는지, 초청받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리 가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 가지고 자료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벽을 쳐 놓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민주당에서 국제연대 및 의원외교 순방의원단 출국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런던협약 당사국 사무국인 IMO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거라든지 또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해양 투기로 결의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활동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런던협약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IAEA가 그 환경영향이 지금 미미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인데요. 그런 경우에 CBD 조항에 보면 ‘심각한 우려 시에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CBD 조항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은 판단이 됩니까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협약 내용을……

○**임이자 위원** 그래서 야당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니까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CBD의 협약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임이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짧게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 대체토론……

○**위원장 박정**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이 5분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보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토론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오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들이 많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편법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를 더 강화해야 될 상황에서 사실 환경부가 적극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열린 7차 적극행정위원회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 부분 열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여기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축소 또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자 축소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허가 전 이전 이런 안전을 심의를 했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개발사업 규모를 30% 이상 증가시킬 경우에 변경협의의 대상이지만 그 증가 규모를 누적 규모가 아니라 해당 추가개발 건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개발 규모가 애초 사업계획의 30%만 넘지 않으면 몇 번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사업자들의 쪼개기 편법 사업추진을 용인하는, 환경부가 보장하거나 용인하는 게 되는데 이걸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름 때문에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장관님, 소규모로 조사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환경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정되는 법안이 의사일정 48항부터 53항, 6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이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서 행정 절차가 늦어졌던 실제 사례 이게 몇 건이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청의 기능복원사업이나 또 산림사업 중 재해예방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래도 산림청이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유로 벌이는 임도사업이나 숲가꾸기, 벌채 등으로 인해서 숲이 아예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률에 이렇게 명확히 규정까지 하는 건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장관님께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와 목적·취지, 사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시 상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나 근간 이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규제를 좀 합리화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법안 관련해서 재난대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한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재난사업 평가 면제 협의 시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공사 시 최소한의 환경보전 방안 마련을 고려해서 이러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하여튼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러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실제 행정 절차가 늦어졌던 사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현안질의 짧게 하나씩 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정** 서면으로 하세요.

아까도 제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 동료 위원의 현안질의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정** 원래 양당 간사의 합의로 오늘 현안질의를 안 하기로 한 건데 그것을 특별히 하실 분들은 그냥 기회를 드렸고요. 한 번 더 하신게 해서……

○**이은주 위원** 저는 대체토론이었기 때문에 현안질의와 상관없이……

○**위원장 박정** 그런데 그 시간 내에 마쳐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분과 5분 내에서.

○**임이자 위원** 노동소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들어와서 하시면 되는 건데도……

○**이은주 위원** 지금 현안질의는 환경부장관님께 하는 현안질의인데 짧게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 특별히 또 시간들을 드려서 양당 간사는 또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왜 약속대로 안 하나 그래서……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회가 어렵게 합의를 했고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사실 현안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잡힌 회의인데 짧은 현안질의까지……

○**위원장 박정**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충남 공주 고마나루에서 천막농성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9월 23일 공주 백제문화제 준비

를 위해서 공주보를 담수해야 된다는 공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수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주보 민관협의체 회의자료를 보면 열흘 간의 백제문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담수를 하면 한 달 정도 담수하게 되는데 담수로 인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수생태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주보 민관협의체 회의자료예요.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악영향은 뚜렷이 나타나며 수위 저하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위 상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도 이런 생태계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담수 말고, 수년간 비슷한 배치의 이런 연출 말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협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수 없는 행사 계획을 논의한다’도 보 운영 민관협의체의 합의 내용인 거고, 이건 제가 환경부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행사 주관하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바로 담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정권이 바뀐다고 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주 주민들도 금강에 각자의 애정이 있겠지만 금강은 공주 주민만의 것도 아니고 또 문화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명이 누릴 터전을 계속해서 해치는 행사 말고 다른 방식을 재고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농성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일단 백제문화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55년부터 쪽 해 온 지역의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지금 농성을, 공주보 담수 철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가 점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공주보 수위 상승을 멈추고 있고요.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것은 안전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공주시가 지금 행사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위 상승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위가 확보가 안 되면 백제문화제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배다리 부교시설의 뒤틀림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수위 상승을 요구해서 꾸준히 해 오던, 매년 해 오던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수생태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안전에 대한, 안전을 이유로 해서 지금 공주보 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단체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뿐만 아니라 수생태계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악화되는 부분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

○위원장 박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관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영진	김형동	노웅래	박대수
박정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비)
이은주	이주환	이학영	임이자
전용기	지성호	진성준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학용 김희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한진주
기획조정실장	손옥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창현
자원순환국장	조현영
환경보건국장	황계석
기후변화정책관	이영복
녹색전환정책관	장기화
대기환경정책관	정선화
물통합정책관	김고응
물환경정책관	김종률
수자원정책관	김구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차관	이성희
기획조정실장	최현석
고용정책실장	이정환
노동정책실장	황보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
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정책기획관	이용욱
국제협력관	김은철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고용지원정책관	임영미
노동개혁정책관	권창준
근로기준정책관	김유진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기상청

청장	유희동
차장	장동언
기획조정관	유상진
예보국장	정관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8. 23. 지성호·김성원·김승수·안철수·김웅·서정숙·박대수·김영식·권명호·최승재 의원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3. 서병수 · 류성걸 · 최승재 · 김미애 · 안철수 · 이현승 · 전봉민 · 양금희 · 조경태 · 정우택 의원 발의)

직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3. 서병수 · 류성걸 · 이태규 · 최승재 · 김미애 · 안철수 · 이현승 · 전봉민 · 양금희 · 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4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8. 25. 권명호 · 구자근 · 김용관 · 김희국 · 백종현 · 이달곤 · 이주환 · 이태규 · 정우택 · 최영희 의원 발의)

8월 28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우원식 · 허영 · 이동주 · 박홍근 · 이학영 · 이수진(비) · 노웅래 · 김영진 · 정일영 · 진성준 의원 발의)

8월 29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8. 29. 김성원 · 정우택 · 최영희 · 김용관 · 이종배 · 이주환 · 이인선 · 김희곤 · 박대수 · 태영호 의원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8. 29. 김성원 · 정우택 · 최영희 · 김용관 · 이종배 · 이주환 · 이인선 · 김희곤 · 박대수 · 태영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29. 신현영 · 강민정 · 김민석 · 김병욱 · 윤영덕 · 진성준 · 정일영 · 홍영표 · 송재호 · 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30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서영석 · 강선우 · 김병욱 · 김성주 · 김한규 · 문진석 · 박홍근 · 서영교 · 신정훈 · 조오섭 · 천준호 · 한준호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서영석 · 강선우 · 김병욱 · 김성주 · 김한규 · 문진석 · 박홍근 · 서영교 · 신정훈 · 조오섭 · 천준호 · 한준호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023. 8. 30. 김영주 · 오영환 · 맹성규 · 이용빈 · 김교홍 · 김병주 · 이학영 · 한준호 · 김홍걸 · 박성준 의원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박찬대 · 허종식 · 전재수 · 유동수 · 임호선 · 박성준 · 박완주 · 조정훈 · 이성만 · 이장섭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3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노웅래 · 고용진 · 김영진 · 서영석 · 신정훈 · 양기대 · 위성곤 · 이학영 · 정일영 · 홍성국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윤상현 · 임종성 · 김예지 · 김영식 · 소병훈 · 최연숙 · 유의동 · 강기윤 · 이현승 · 양향자 · 김희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임이자 · 金炳旭 · 김형동 · 조수진 · 권명호 · 최영희 · 지성호 · 한무경 · 박대수 · 박진 의원 발의)

9월 5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송갑석 · 오영환 · 이소영 · 박홍근 · 이원욱 · 강훈식 · 김성환 · 이동주 · 이용우 · 신정훈 · 민형배 · 서삼석 · 조오섭 · 윤후덕 · 어기구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최혜영 · 임호선 · 김상희 · 기동민 · 홍성국 · 맹성규 · 정태호 · 조오섭 · 이학영 · 신영대 · 문진석 · 김원이 · 박홍근 · 김민석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변재일 · 박홍근 · 윤준병 · 박완주 · 정태호 · 정필모 · 서영석 · 양정숙 · 양향자 · 윤영찬 · 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6일 회부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6. 이동주·김용민·박상혁·허종식·조오섭·양정숙·정일영·최기상·우원식·윤후덕·강병원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이주환·김성원·구자근·전봉민·김학용·안병길·김용관·임이자·권명호·정동만·이현승·하태경·홍석준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양이원영·황운하·강민정·위성곤·김원이·진성준·김의겸·안호영·김정호·우원식·이수진(비)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이학영·문진석·임호선·이장섭·박홍근·조정식·정필모·김태년·유기홍·이수진(비)·진선미·조오섭·남인순·최혜영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이주환·김성원·구자근·전봉민·김학용·안병길·김용관·임이자·권명호·정동만·이현승·하태경·장동혁·홍석준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김영선·최연숙·정운천·이명수·백종현·윤영석·서병수·이종성·조해진·한기호·윤상현·최재형·엄태영·정경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김영선·최연숙·정운천·이명수·백종현·윤영석·서병수·이종성·조해진·한기호·윤상현·최재형·엄태영·정경희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이수진(비)·서영교·김주영·김정호·이용빈·김종민·신동근·이학영·송옥주·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9월 8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이주환·김성원·구자근·전봉민·김학용·안병길·김용관·임이자·권명호·정동만·이현승·하태경·장동혁·홍석준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한준호·이상현·최종윤·유정주·최인호·이원욱·박상혁·김경협·송옥주·조승래·정일영·민홍철·김병기·박홍근·기동민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이원욱·김철민·홍성국·김영주·양정숙·장철민·서영교·박홍근·오영환·한정애·김홍걸·홍기원·고용진·이용빈·정춘숙·강민정·송옥주·한준호·강훈식·조오섭·홍영표 의원 발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3. 9. 8. 정부 제출)

이상 4건 9월 11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임이자·서병수·권명호·최영희·지성호·한무경·박대수·백종현·박진·이주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김미애·백종현·김학용·윤상현·이용·최춘식·이인선·김석기·이채익·강기윤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김병기·황운하·문진석·강준현·정일영·홍기원·정성호·장경태·김두관·박용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김미애·백종현·김학용·윤상현·최춘식·이인선·김석기·이용·이채익·강기윤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우원식·이동주·김성환·주철현·이수진(비)·노웅래·박정·전용기·이학영·윤준병·허영·김정호·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한병도 · 김수홍 · 김성주 · 양정숙 · 신영대 · 임호선 · 안호영 · 윤준병 · 김윤덕 · 이원택 · 최강욱 · 윤영찬 · 문진석 · 송재호 · 강병원 · 이해식 · 한준호 · 김의겸 · 박용진 · 진선미 · 허영 · 강성희 · 송기현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정운천 · 최춘식 · 지성호 · 김성원 · 최영희 · 이용호 · 김학용 · 최형두 · 이채익 · 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윤미향 · 김용민 · 송갑석 · 이학영 · 안호영 · 김의겸 · 서동용 · 소병훈 · 전용기 · 정태호 · 이성만 · 민형배 · 강민정 · 윤준병 · 최강욱 · 이수진 · 강성희 · 양정숙 · 주철현 · 김종민 · 황운하 · 한정애 · 어기구 · 이동주 · 김두관 의원 발의)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김한정 · 이용빈 · 홍정민 · 이학영 · 이상현 · 김영배 · 박성준 · 한병도 · 신현영 · 정일영 의원 발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구자근 · 안병길 · 박대수 · 장동혁 · 성일종 · 양향자 · 이주환 · 이종배 · 박성민 · 김희곤 의원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김주영 · 조정식 · 최혜영 · 이원욱 · 정일영 · 김정호 · 이수진 · 박상혁 · 이동주 · 윤미향 · 어기구 · 김경협 · 강민정 · 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견서 송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2023. 9. 1.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9월 4일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기타
환경 소관	1	4	5	1	12	4
고용노동소관	-	-	6	1	6	3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36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소관	2023. 8. 22.
부령	제10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소관	2023. 8. 22.
부령	제105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소관	2023. 8. 28.
부령	제10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소관	2023. 8. 30.
부령	제105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소관	2023. 8. 30.

○보고서 제출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 9. 6. 기획재정부장관 제출)